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360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5
1.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5
가. 퇴직급여제도 개요 및 현황	5
나. 총괄검토	8
2. 주요 조문별 검토	17
가. 운영방법(계약형·기금형)의 설정과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신고 등(안 제4조의2, 제13조 및 제19조)	17
나. 수탁법인의 설립 및 명칭(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	21
다. 수탁법인의 기관과 감사 등(안 제31조의6 및 제31조의9)	25
라. 수탁법인의 업무 수행 및 운영비용(안 제31조의7 및 제31	

조의8)	31
마.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의 책무(안 제33조의2 및 제33 조의3)	37
바.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감독(안 제36조의2 및 제 36조의3)	41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7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계약형) 외에 추가로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과 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함.

나.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안 제21조의5 신설)

계약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개별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새로 도입되는 기금형의 경우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합리적 자산운용을 통해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다. 수탁법인의 설립(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한정하여 수탁법인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탁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가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되, 구체적 요건은 수탁법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수탁법인의 기관(안 제31조의6 신설)

수탁법인에 이사와 감사를 두되, 수탁법인의 이사는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과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을 같은 수로 두도록 하면서 자산 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선임하도록 하여 이사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퇴직급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탁법인 이사와 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한편, 이사회로 하여금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행의 계약 체결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마. 수탁법인의 업무 및 책무(안 제31조의7 및 제33조의2 신설)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업무 및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이나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부담금 수령, 계좌 설정 등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운용계획서에 따른 적립금 운용 의무 등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수탁법인에게 부여함.

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등(안 제31조의9 신설)

수탁법인의 감사에게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수탁법인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여 사용자 등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함.

사. 자산운용기관의 책무 등(안 제33조의3 및 제36조의3 신설)

수탁법인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자산운용기관)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및 취급실적 제출 의무 등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산운용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이 취소된 자산운용기관은 일정기간(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아.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안 제36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법인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IV. 검토의견

1.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 퇴직급여제도 개요 및 현황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구성되는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①사용자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이하 ‘DB’)**, ②사용자 납입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 ③개인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책임을 모두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d Pension, 이하 ‘IRP’)**로 구분되고,¹⁾ 이와 별개로 ④상

1)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DB, DC를 갈음하여 사용자가 I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음.

시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퇴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퇴직급여 제도 개요>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 자 등 소득이 있는자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규약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업주·근로자 각 각 사업주 부담금의 10%(월 268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의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①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IRP)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²⁾)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계약형과 ②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독립된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기금을 운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DB, DC, IRP는 계약형 퇴직연금에 해당하고 중퇴기금제도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임.

2)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구 분	계약형제도	기금형제도
개 관		
연금관리형태	금융회사 일괄위탁	독립적인 퇴직연금 기금 설치
관리 및 운영주체	금융회사 (운영기관, 관리기관)	기금운용 외부위탁
운용감독	금융기관 대상	개별연금기금감독

나. 총괄 검토

1) 계약형·기금형 운영방식의 장·단점

퇴직연금의 운영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계약형은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³⁾)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⁴⁾하고, 직접

3)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형태로 한국, 일본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기금형은 사업체와 별도로 독립된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마련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게 하는 형태로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계약형은 제도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관리, 적립금 보관 및 퇴직급여 지급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관리가 용이하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 금융기관이 기존 영업망을 이용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양적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구축되어 있는 금융기관 감독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없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계약형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대다수 근로자들은 금융지식 및 노후자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립금 운용에 무관심하고,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보다는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하는 행태를 보여 적립금 운영 수익률이 낮을 우려가 있다고 보임.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노사의 대리인(Agent)으로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며, 수탁법인 내부 전문

4) 현행 계약형 제도는 운영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분리하여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 업무의 분리를 통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임.

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 운용 위탁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⁵⁾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

특히, 기금형은 전문가가 포함된 이사회가 운영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수익률 보장 일변도의 자산운용 방법에서 탈피하여 수탁인의 책임아래 장기적이고 유연한 적립금 자산운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음.⁶⁾

다만, 수탁법인은 적립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조직,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보수, 자산운용 전문인력 또는 외부 컨설팅에 대한 자문료, 그 외 연금 계리, 회계감사, 가입자교육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지출을 감수하여야 할 위험도 있다고 볼 것임.

2) 한국의 퇴직연금 운영 실태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당시 퇴직연금사업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계약형 구조를 상정하여 마련되었고,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퇴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금형과 유사한 구조가 도입된 것으로 볼 것임.

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확대 및 권리강화-기존 계약형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금형제도 도입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8.31

6) 한국채권연구원,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방안(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과제)」, 2015.10

한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중퇴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3년 기준 382조 4천억원이고,⁷⁾⁸⁾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205조 3천억원, 확정기여형(DC)·IRP특례(기업형IRP) 101조 4천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 75조 6천억원이 적립되었는데, 이 중 333조 3천억원(87.2%)이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된 반면, 49조 1천억원(12.8%)만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되고 있어 원리금보장상품이 주된 운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적립금 규모 및 비중>

(단위: 조원, %)

구 분	DB		DC·IRP특례		IRP		전 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05.3	100.0	101.4	100.0	75.6	100.0	382.4	100.0
원리금보장형	195.8	95.3	83.1	81.9	54.5	72.1	333.3	87.2
실적배당형	9.6	4.7	18.4	18.1	21.1	27.9	49.1	12.8

*2023년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5년 연환산 2.35%, 10년 연환산은 2.07%이고, 적립액 비중이 높은 원리금 보장형은 5년 연환산 2.12%, 10년 연환산 2.01%로 실적배당형에 비해 각각 2.16%p, 0.74%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임.

7) 중퇴기금제도(0.5조원) 포함 시 382조 9천억원임.

8) 타 연기금 규모(2023년): 국민연금 1035.8조원, 사학연금 26.3조원, 공무원연금 7.8조원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수익률 현황>

(단위: %)

권역	구분	DB	DC·IRP특례	IRP	전체
전체	5년	2.18	2.56	2.54	2.35
	10년	2.01	2.26	1.99	2.07
원리금보장형	5년	2.18	2.14	1.84	2.12
	10년	2.04	2.13	1.74	2.01
실적배당형	5년	3.25	4.51	4.32	4.18
	10년	2.88	2.84	2.62	2.75

*2023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3) 검토의견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산운용 등을 위탁하고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DB, DC, IRP)이고⁹⁾ 계약형 퇴직연금은 가입자(DB형의 경우 사용자, DC·IRP의 경우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사용자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의 수준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유인이 적고, 근로자로서는 제한적인 금융지식, 노후자산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인해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것임.

9) 중퇴기금제도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2023년 기준 적립금이 4,734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2023년 기준 382조 4천억원) 비중에 비추어 소규모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의 운영방법(계약형·기금형) 설정 근거와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신고, 수탁법인의 설립 및 명칭, 기관, 업무 수행, 감독 등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DB, DC에 관하여 그 적립금·부담금을 수탁법인에 신탁하는 형태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② 수탁법인은 적립금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이거나 가입자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설립할 수 있으며,

③ 수탁법인의 이사는 i)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 ii)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 iii)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 사람으로 하되, i)과 ii)의 수를 동수(同數)로 하고,

④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 업무, 연금제도 설계 및 회계처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등 운용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나,¹⁰⁾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등 자산관리업무는 퇴직연금사업자¹¹⁾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10) 적립금 운용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자산운용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운용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음.

11)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⑤ 수탁법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그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등을 준수 하여야 하고, ⑥ 일정한 적립금 규모를 초과하는 수탁법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⑦ 수탁법인과 수탁법인으로부터 적립금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기관에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부과됨.

개정안은 ①통합적인 자산관리기구(수탁법인)에서의 장기적·집합적·전문적 투자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②가입자의 투자 의사를 반영하여 자유로운 퇴직연금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입자의 적극적인 자산운용 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제한적인 금융지식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퇴직연금 운용의 제약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제도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③기업간 통합형 수탁법인 설립을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¹²⁾에서 의미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안 제31조의2(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 ①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있다고 볼 것임.

다만, ①수탁법인의 운영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노·사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②수탁법인은 노·사의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적립금 운용에 관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③수탁법인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수탁법인을 통한 자산 운용 자체가 적극적·장기적·전문적 투자에 따른 수익률 제고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④수탁법인의 운용실패에 따른 부담은 그 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시 노사정위원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 구조를 도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기금형 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미 시행('22.9월)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성과 분석, 연구용역,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 하나의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연간 적립금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이거나 가입자 수가 3만명 이상일 것

2. 둘 이상의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각 사업의 연간 적립금 규모가 합산하여 3천억원 이상이거나 각 사업의 가입자 수가 합산하여 3만명 이상일 것

③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권(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은 퇴직연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근로자의 퇴직 급여 수급권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고¹³⁾ 운용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운용지시권 제한,¹⁴⁾ 운영과 책임의 귀속주체에 관한 문제¹⁵⁾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제도도입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도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¹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책당국 주도로 계약형 제도 안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므로,¹⁷⁾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3) ① 기금형 제도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운용 과정에서 원금손실 위험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② 수탁법인이 적립금 운용과 관리를 책임지는데, 그 운용손익은 가입자(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등 운용주체와 손익귀속 주체간 불일치에 따른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탁법인의 횡령, 배임, 태만 등 도덕적 해이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다양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수탁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이며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권한이 미치지 곤란한바, 기금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금형 도입 시 근로자 수급권 제약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④ 기금형 제도는 수탁법인, 운용회사 등이 운용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대규모 운용손실 발생에 따른 수탁법인 부실화 또는 파산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⑤ 연합형 수탁법인 설립 시 규모가 큰 기업이 기금운영 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소규모 기업도 공동으로 손실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4) DC형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백한 개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원금손실 발생 시 모든 손실이 근로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5) DB형은 사용자가 모든 재원을 부담하고, 자산운용 결과도 책임지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금형 제도를 DB형에 강제하는 경우 손실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소송이 빈번해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6)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근본 원인은 퇴직연금 지배구조가 아닌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수탁법인의 설립·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의 추가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는 퇴직급여 적립비용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원리금보장형 선호 현상은 당연하며, 기금형 지배구조가 도입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위해 변동성이 높은 실적배당형으로 자산운용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7) (DB형)적립금운용계획서 시행('22.7월), (DC형)디폴트옵션 시행('23.7월), (IRP)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시행 예정('25.1월), (공통)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24.10월)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운영방법(계약형·기금형)의 설정과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신고 등(안 제4조의2, 제13조 및 제19조)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DB, DC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약형 또는 기금형의 방식으로 운영방법을 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안 제4조의2), 기금형으로 운영되는 DB 퇴직연금규약에는 수탁법인의 설립 또는 선정에 관한 사항, 수탁법인과의 신탁설정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DC 퇴직연금규약에서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음(안 제13조 및 제1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조의2(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그 운영방법을 정하여야 한다.</u> <u>1.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하 “계약형”이라 한다)</u>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 6. (생략)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신설>

2. 수탁법인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방법(이하 “기금형”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을 정한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정(기금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의 설립 또는 선정을 말한다)-----

2. ~ 6. (현행과 같음)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기금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법인과의 신탁설정계약을 말한다)

7의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나 운영방

8. ~ 11. (생략)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u>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4. <u>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u> 4의2.·5. (생략) 6. <u>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u> 7. (생략) ② (생략)	<u>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u> 8. ~ 11. (현행과 같음)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① <u>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4. ----- -----<u>사항(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한정한다)</u> 4의2.·5. (현행과 같음) 6. <u>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u>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용자가 DB, DC에 대하여 기금형 구조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퇴직연금규약에서 포함할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임.

기금형은 수탁법인에 대한 신탁계약의 형식으로 퇴직연금 적립금(DB)·부담금(DC)을 운용하고, 구조상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제한한다고 볼 것이므로¹⁸⁾ 수탁법인의 설립 또는 선정, 수탁법 인과의 신탁설정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시키고,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다만, 현행법 제19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DC 퇴직연금규약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데, 기금형의 투자구조상 사전 지정운용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인바 기금형 선택 시 해당 사항도 퇴직연금규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행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 개인이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DC 퇴직연금규약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8) 수탁법인이 적립금 운용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자의 지위에 있음.

나. 수탁법인의 설립 및 명칭(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탁법인의 설립의 요건 및 절차,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함.

[수탁법인의 설립요건 및 성격]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나의 사용자 또는 복수의 사용자가 설립할 수 있는데, 연간 적립금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이거나 가입자 수가 3만명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수탁법인 설립 절차 등] 준비위원회는 수탁법인의 정관, 인적·물적 요건의 증명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탁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요건을 심사하여 설립허가를 하며, 준비위원회는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수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수탁법인의 명칭] 수탁법인의 명칭에는 ‘퇴직연금 수탁법인’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장의2 수탁법인</u>
<신설>	<u>제31조의2(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 ①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탁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u>1. 하나의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연간 적립금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이거나 가입자 수가 3만명 이상일 것</u> <u>2. 둘 이상의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각 사업의 연간 적립금 규모가 합산하여 3천억원 이상이거나 각 사업의 가입자 수가 합산하여 3만명 이상일 것</u> <u>③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u>제31조의3(수탁법인의 요건) ①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야 한다.</u> <u>② 수탁법인은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신설>	<u>제31조의4(수탁법인의 설립) ① 준비위원회는 수탁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탁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u> <u>1. 수탁법인의 정관</u> <u>2.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u> <u>3. 그 밖에 수탁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u>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탁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수탁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수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수탁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법인 업무범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의5(수탁법인의 명칭 등) ① 수탁법인의 명칭에는 “퇴직연금 수탁법인”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탁법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탁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와 수탁법인의 요건 및 성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탁법인은 단일 사업 또는 복수의 사업을 대상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 ① 연간 적립금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이거나 가입자 수 합산이 3만 명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기금형 도입을 통해 집합적·대규모 자산운용을 도모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 적립금의 규모나 가입자 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고, 수탁법인이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고용노동부는 비영리법인의 낮은 전문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고, 영리법인 진입 제한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기금형 제도 내에서 다양한 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수탁법인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탁법인의 최소 적립금 규모 및 가입자 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수탁법인의 기관과 감사 등(안 제31조의6 및 제31조의9)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탁법인의 기관인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자격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 수탁법인의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는 ①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 ② 근로자대표¹⁹⁾가 선임한 사람, ③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 사람으로 하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이사의 수는 동수(同數)로 하고,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함.

[이사·감사의 결격사유]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에 취임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임요구에 따라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어나 감사로서 해임된 자는 2년간 이사·감사에 취임할 수 없음.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 적립금 운용에 관한 계획서 작성 및 변경, 적립금 운용 및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또는 적립금 운용,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

19)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 심의·의결함.

[회계감사 및 검증] 연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수탁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감사인)²⁰⁾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DB의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수탁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²¹⁾ 등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독립계리업자²²⁾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²³⁾ 감사, 회계감사, 검증의 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함.²⁴⁾

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1)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22) 「보험업법」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계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1조(보험계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83조(보험계리업)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3) 안 제48조에 따라 회계감사 또는 검증을 받지 아니한 수탁법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1조의6(수탁법인의 기관) ① 수탁법인에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수탁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같아야 하며, 하나의 수탁법인이 둘 이상의 사용자와 신탁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호별 이사의 선임방법은 각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 2.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 3. 자산 운용에 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 사람 ③ 수탁법인의 감사는 수탁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법인의 이어나 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어나 감사가 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

24) 안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사, 회계감사, 검증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사, 회계감사인, 독립계리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신 설>	<u>니한 사람</u> 7. 「<u>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u>」 제2조제7호에 따른 <u>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이사만 해당한다)</u> 8.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가입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 <u>적립금 운용의 원칙, 적립금 운용성과의 평가 등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운용계획서”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u> 2. <u>적립금 운용 및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또는 투자일임계약,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u>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가입자 교육 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의9(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등) ① 감사는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 법에 따른 수탁법인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u>연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u>
--------------------	---

	<u>2.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회계감사의 실시를 의결한 경우</u> <u>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수탁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부담금의 부담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u> <u>④ 감사, 회계감사인, 독립계리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회계감사 또는 검증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탁법인의 기관으로서 이사와 감사의 요건과 선임방법, 결격사유,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법인의 의사결정과정을 구성하고, 수탁법인의 회계감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수탁법인의 자체 감독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이사의 선임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각각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자 선임한 이사의 수를 동수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여 노·사가 수탁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동등한 지위에서 대표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수탁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및 급여 지급능력 검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탁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탁법인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라. 수탁법인의 업무 수행 및 운영비용(안 제31조의7 및 제31조의8)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탁법인의 업무 수행 범위와 위탁 방식이나 절차 등 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수탁법인으로부터 적립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기관의 구체적인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법인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귀속시키고 수탁법인의 자금 차입(借入)이나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탁법인의 업무 수행 범위]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자산관리업무는 위탁하여야 함.

[수탁법인의 업무 위탁 대상 및 형태]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에 대하여 자산운용기관(①투자일임업자²⁵⁾로서 ②집합투자업²⁶⁾ 인가를 받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⑧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금융투자업자)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았거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²⁷⁾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고, ^③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과 투자일임계약²⁸⁾을 체결할 수 있고,

운용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와 그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업무에 관하여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식으로 그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업무 위탁의 제한]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적립금 운용 업무는 각각 별개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음.

[적립금 운용 원칙]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을 따라야 함.

-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㉘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㉙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8.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비용 및 차입 등의 제한] 수탁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수탁법인은 자금 차입이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음.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7(수탁법인의 업무 수행) ①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립금 운용 2. 운용관리업무(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4호의 업무는 제외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이 경우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산운용기관”이라 한다)와 제1항제1호에 따른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

<u><신 설></u>	<u>른 투자일임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였을 것</u> <u>2.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u> <u>③ 수탁법인은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운용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u> <u>④ 수탁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u>
	<u>제31조의8(수탁법인의 운영비용 등) ① 수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u> <u>② 수탁법인은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u>

2) 검토의견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자산관리업무는 위탁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수탁법인의 업무범위>

업무 구분	DB	DC
① 적립금 운용(투자의사결정)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위탁 가능)	○	○

업무 구분		DB	DC
② 운용관리업무 (일부위탁가능)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X	X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X	○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	X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택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X	X
	5.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
③ 자산관리업무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의 방식으로 반드시 위탁)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X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수탁법인이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금형 구조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수탁법인이 갖추 수 있는 전문성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탁법인의 업무를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적립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인 자산관리업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함으로써 수탁법인의 전문성에 따라 자율적인 투자결정을 허용하면서도 퇴직급여의 지급 사무 등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적립금 운용에 관한 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수탁법인으로부터 자산운용기관에 위임될 수 있는데, 자산운용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정적 건전성, 적립금의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 운영에 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

개정안은 적립금 운용에 관하여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데, 이는 적립금의 운용 실패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전한 자산운용 기준과 방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볼 것임.

개정안은 수탁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수탁법인의 자금 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한하는데 이는 수탁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해당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고용노동부는 현행 사전지전운용제도는 가입자 개인이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수탁법인의 업무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마.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의 책무(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탁법인과 자산운용기관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건전한 사무 처리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제출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탁법인의 책무] 수탁법인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수탁법인에 대하여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²⁹⁾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의 제출 의무, 적립금 운용현황의 공시 의무를 부과함.³⁰⁾

[수탁법인의 금지 행위] 수탁법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³¹⁾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³²⁾

[자산운용기관의 책무] 자산운용기관의 성실·충실한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자산운용기관에 대하여 투자일임계약의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의 공시 의

29) 안 제48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0) 안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탁법인이 취급실적을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1) 안 제45조에 따라 수탁법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투자일임계약,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2) 안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탁법인이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무33) 등을 부과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수탁법인의 책무) ① 수탁법인은 법령 및 신탁설정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법인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법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적립금 운용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 설>	제33조의3(자산운용기관의 책무) ① 자산운용기관은 이 법을 준

33) 안 제48조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기관이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공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u>수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u> <u>② 자산운용기관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u> <u>③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④ 자산운용기관은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u> <u>⑤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 운용 현황의 통지 등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	--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탁법인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가입자가 수탁법인의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건전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퇴직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것임.

개정안은 수탁법인과 자산운용기관의 취급실적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에 관한 감독기관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개정안은 수탁법인과 자산운용기관에 대하여 적립금의 운용 현황이나 수익률 등을 공시하게 하는데, 수탁법인과 자산운용기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계약형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다만, 수탁법인뿐만 아니라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자산운용기관에 대하여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양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자산운용기관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취급실적 제출 의무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바. 수탁법인 및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감독(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수탁법인에 대한 허가취소, 시정명령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자산운용기관의 등록취소, 시정명령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수탁법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법인의 이어나 감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경우 그 이어나 감사를 선임한 자에게 해당 이어나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산운용기관이 해산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된 자

산운용기관은 3년간 등록을 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 말소된 후 2년간은 재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산운용기관은 투자일임계약의 해지 안내 등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³⁴⁾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6조의2(수탁법인에 대한 허가취소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u>1. 해산한 경우</u> <u>2.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u> <u>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u>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u>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와 수탁법인 간에 체결된 신탁설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u> <u>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의 이어나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u>

34) 안 제44조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기관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 설>	에는 그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 자에게 해당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3(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산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말소된 날부터 2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산운용기관은 투자일임계약의 해지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검토의견

안 제36조의2제1항은 수탁법인의 허가취소에 관하여 ‘허가요건의 불비’에 대하여는 의무적인 취소를 규정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에 대하여는 의무적인 취소를 규정하지 않는데, 후자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것이고 인적·물적 요건의 불비에 관하여는 시

정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인바 전자에 관하여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의무적인 허가 취소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안 제36조의2제3항은 수탁법인의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해산을 명하는 것인데, 법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나 불법성의 정도, 수탁법인의 해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 운영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탁법인이 해산될 수 있으므로, 해산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면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고, 해산명령 이후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고 볼 것임.³⁵⁾

고용노동부는 수탁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여 건전한 제도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 시정명령이나 허가 취소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경우³⁶⁾에 대해서는 수탁법인의 불법성,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

35) 안 제36조의3에 따르면 자산운용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는 자산운용기관에게 사용자 및 가입자의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용자 및 가입자를 보호하고 있음.

36) 안 제36조의2에 따르면 허가 취소는 수탁법인이 해산하거나 허가 요건을 사후에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이고 시정명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임